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2024. 2.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실무담당	대외협력팀	팀장	이우형	02-739-7649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과장	노유곤	02-739-7648



# 목 차

<b>. 사업개요                                   </b>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2
Ⅱ. 정보화 현황 · · · · · · · · · · · · · · · · · ·	3
1.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 (	3
1. 추진목표	3
2. 추진체계 및 역할	4
3. 추진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5
1. 도입 목록	5
2. 요구사항 총괄	6
3. 요구사항 목록	6
4. 요구사항 상세	8
∨. 제안안내 사항 · · · · · · · · · · · · · · · 29	9
2. 사업자 선정 방식	
3. 제안서 평가 방법 ············ 3	
4. 제안서 제출 안내	
5. 제안요청 설명회 ······ 3	
· ·	' /
6. 제안평가 발표 3	

VI. 제안서 작성 요령 · · · · · · · · · · · · · · · · · ·	43 43
[별첨 1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47
[별첨 2호]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3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49
[붙임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붙임 4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버식 1호]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	
[서식 2호] 제안서 객관적 평가 산정표	
[서식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67
[서식 4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주요사업 실적	67
[서식 5호] 사업 실적 증명서	68



## L

###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 □ 사업명: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 [별첨 1호]
-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업비: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 ·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90%, 기격 10%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병원 정보의 재해복구 체계 부재
  -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의 재해 요인으로부터 적십자병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 원격지에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시스템 오류 및 결함 등 불의의 시스템 중단에도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한 장애대응 체계 구축 필요

### 3. 사업범위

###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도입대상 물품

구분	수량	비고
▶ 데이터베이스 서버	1식	재해복구센터 설치
- DBMS	4식	
- 데이터복제 SW	12식	주센터 포함

※ <u>발주기관의 기 운영 시스템(주 센터)과 동일 체계, 안정적 연계 및 효율적</u>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 제안

###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각 병원 DB의 주 센터 이관 시 DBMS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서비스 구성
- 최적의 주 센터 DB 자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주 센터와 재해복구센터 DB의 실시간 복제 구성
- 각 병원에서 주 센터 DB로 업무전환 지원

#### □ 재해복구 절차 교육 및 지원

○ 실제적 재해복구 훈련 방안 제시 및 교육 지원

#### □ 통합 대상 DB

대상 병원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업무)	데이터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전자의무기록		진료, 원무, 검사,
통영적십자병원	ゼバコナバー (EMR)	병원정보시스템	
거창적십자병원			처방 정보 등
경인권역재활병원			
영주적십자병원			



### Ш

### 정보화 현황

#### 1.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업무 세부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Ш

### 시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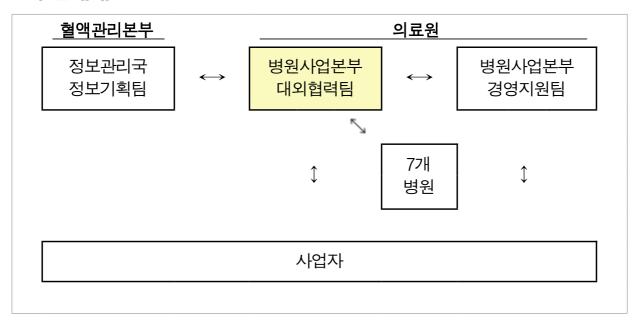
#### 1. 추진목표

- □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진료 기반 마련
- 불의의 시스템 중단에도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한 장애대응 체계 구축
- □ 진료정보 보호와 복구
  - 자연재해,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자료 유실 또는 손상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 장애 시 진료연속성 확보로 환자와 직원의 불편 최소화



### 2. 추진체계 및 역할

### □ 추진체계



### □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의료원	병원시업 <del>본부</del> 대외협력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 사업자 선정 및 추진사업 총괄 관리 감독  ● 사업추진 의견 협의·조정 및 진도 관리  ● 도입 시스템 설치 확인 및 사업 결과물 최종 승인  ● 완성 시스템 검수
	경영지원팀	● 사업 공고 및 계약 등
	병원	● 단위업무 테스트 ● 운영 리허설 및 검증
혈액관리 <del>본부</del>	정보관리국 정보기획팀	<ul><li>보안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업무 지원</li><li>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업무 지원</li><li> 공동재해복구센터 입주 관리 및 유지관리 등</li></ul>
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업 진도 관리 및 납기일 준수 ● 결과 산출물 품질 관리 ● 구축 시스템의 사후 관리 및 하자 보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4. 추진일정

구분	М	M+1	M+2	M+3	M+4	M+5
⊋ 분석 및 설계						
<b>⊘</b> 설치						
⊋ 환경구성 및 검증						
⊋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검증						
○ 안정화 지원						
	*					*

<sup>※</sup>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및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Ⅳ 제안요청 내용

### 1. 도입 목록

	<b>GIO</b>	l터버	I이스	서버:	1식
--	------------	-----	-----	-----	----

□ DBMS: 4식

□ 데이터복제 솔루션: 12식(주 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설치)

※ 위 서버 도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 및 관리 환경(소프트웨어 등) 구축 포함

### 2. 요구시항 총괄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ECR)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	6
(SFR) 기능 요구사항	SFR-00	1
(PER) 성능 요구사항	PER-00	2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	1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R-00	6
(TER) 테스트 요구사항	TER-00	1
(CSR) 컨설팅 요구사항	CSR-00	1
(SER) 보안 요구사항	SER-00	7
(QUR) 품질 요구사항	QUR-00	4
(COR) 제약사항	COR-00	4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	3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	3
합계		39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3. 요구시항 목록

No	Co	de	요구사항 명
1	ECR	01	장비 공통
2	ECR	02	장비 제안 사유 제시
3	ECR	03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4	ECR	04	장비의 설치 및 배치
5	ECR	05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비(하드웨어) 규격
6	ECR	06	도입 자원의 라이선스 제공
11	SFR	01	시스템 설치
12	PER	01	신규 장비 품질보증 및 증빙자료 제출
13	PER	02	시스템 성능 검증
14	SIR	01	시스템 인터페이스
15	DAR	01	데이터베이스 이관

####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No	Co	ode	요구사항 명
16	DAR	02	데이터베이스 이관 환경 구축
17	DAR	03	데이터베이스 이관, 검증 및 안정화 방안
18	DAR	04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19	DAR	05	데이터 표준화 준수
20	DAR	06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21	TER	01	테스트 요구 일반 사항
22	CSR	01	데이터베이스 튜닝 요구사항
23	SER	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24	SER	02	장비 보안 일반사항
26	SER	03	보안 교육
26	SER	04	인력 보안
27	SER	05	물리적 보안
28	SER	06	관리적, 기술적 보안
29	SER	0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30	QUR	01	도입 장비 품질
31	QUR	02	가용성 보장
32	QUR	03	신뢰성
33	QUR	04	장애 대응
34	COR	01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질
35	COR	02	작업 수행 장소
36	COR	03	구축 환경
37	COR	04	유관 정보화 사업 고려
38	PMR	01	사업 수행 계획 및 보고
39	PMR	02	위험 관리
40	PMR	03	검수 및 검사
41	PSR	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42	PSR	02	장애 조치
43	PSR	03	기술 지원



# 4. 요구사항 상세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
요구사항 분	<del>로류</del>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용량 및 수량은 제안요청서의 규격 및 수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li> <li>○ 도입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시스템 관리·운영정책, 백업정책 등에 맞게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전, 추가, 업그레이드 및 신규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신규 도입되는 제품은 기존 운영되는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li> <li>○ 신규 도입되는 제품의 라이선스는 현 시스템 구성 및 제안되는 서버의 수량, CPU 코어 및 용량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 후 제안하고 재배치 가능 시 재배치하여야 함</li> <li>○ 신규 도입 서버는 계약시점과 설치시점의 시간차를 고려하여야 함</li> <li>- 제안되는 제품은 동종업계 Reference Site를 가진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li> <li>- 정능과 규격의 적합성 판단은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요구 성능과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li> <li>○ 도입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li> <li>○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 규격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환경 및 본 사업목표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또는 최적의 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 사유 및 증빙자료,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함</li> <li>○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함</li> <li>○ 구성에 필요한 케이블(UTP Cat.6, 광케이블 등)을 제공하여야함</li> <li>○ 모든 SW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버전으로 설치하여야함</li> <li>○ 모든 SW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버전으로 설치하여야함</li> <li>○ 모든 SW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버전으로 설치하여야함</li> <li>○ 모든 SW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버전으로 설치하여야함</li> <li>○ 모든 SW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버전으로 설치하여야함</li> </ul>

	원활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반드시 원활한 납품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신규 도입되는 제품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의 규격은 최소한의 사양이며 구성상 필요한 파트 및 장비들은 제안 시 추가 제시하여야 함    교체 장비에 대하여 기존 장비 대비 성능점검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시간을 발주기관의 기준에 맞도록 동기화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납품확인서, 설치결과서,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 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제안 사유 제시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제안사는 제안한 제품별 선정 사유와 타제품 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li> <li>- 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최근 국내·외 시장 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 처리 적합성, 기술지원력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li> <li>- 제품 기능, 성능, 규격, 확장성, 보안성, 유지관리 요율 비교표 제시</li> <li>- 제안 제품의 수량, 용량, 기능, 라이선스 등 상세 규격 제시</li> <li>○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의 선정사유에 대한 설명 또는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자료 요구 시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신규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기존 보안제품 등과의 충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행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그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당	명 칭	장비의 설치 및 배치
요구사항 분	<del>-</del>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전원 및 통신 케이블 설치 및 재배치 시 운영담당자가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Name Tag을 부착하여야 하며, 케이블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고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운영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의 영향도 분석한후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 전원 구성품, 기타 소요 부속품 등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시는 설치 중 하드웨어 또는 타 네트워크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제안사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부담하며,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부대장비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버실 등에 제품 반입 시 1주일 전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버실 등에 제품 반입 시 1주일 전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범운영 전 데이터 이행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신규 도입 장비 및 관련 SW를 납품하고, 설치 및 설정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설치 계획서, 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비(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분	<del></del> 로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비(하드웨어) 규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신규 도입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비(하드웨어)는 아래 명기된 사양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과 설치시기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설치시점에 요구 성능과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사양 -  ● 도입품목: 병원정보시스템 재해복구 DB 서버 ● 도입수량: 1식 ● 기본규격  ○ CPU: 인텔 제온 2.4GHz 16Core *2EA 이상 제공  ○ 메모리: 512GB 이상 제공(최대 1TB 확장 가능) ○ 디스크: 240GB M.2 SSD * 2EA 이상 제공(RAID 1구성) ○ 공유스토리지: 6.8TB NVMe * 4EA(RAID 1구성) ○ 인터페이스  - Quad Port 10GBase-T Adapter * 1EA ● 요구사항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납품 형태 제품으로 제공할 것 ○ 운영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도입하는 DBMS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플라이언스 장비 제안 가능 ○ 데이터베이스 및 설치가 2시간 이내 GUI 또는 마법사 기반의설치 및 구성 가능할 것 ○ 펌웨어, OS, 관리SW, DBMS 등이 하나의 통합된 패치 번들형태로 설치 구성 가능할 것
		○ 전원 및 쿨링 팬 이중화 구성 제공 ○ 기존 서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관 작업 지원
		○ OEM 및 ODM 제품 제외
		<ul> <li>제안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구축 후 업무증가 및 신규 업무적용 등을 대비하여 유연한 확장구조를 제공하여야 함</li> <li>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및 역복제업무를 고려하여 수행이 가능한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li> <li>도입되는 제품은 기존 운영 중인 HW(서버, 백업장치, 디스크, 네트워크 등) 및 SW들과 호환성, 연동성 및 안정성(기존보안제품 등과의 충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대안을 제시하여야 함</li> </ul>

	- 기존 운영 장비와 연계 구성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제안 포트 수량에 맞게 GBIC 및 케이블 일체 포함하여 제공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I/O는 필요에 따라 제안하여야
	함
	○ 도입되는 서버는 규격 및 요구사항을 감안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	고유번호	ECR-06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자원의 라이선스 제공
요구사항 분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모든 도입 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최소 설치 업무단위로 구분하여 각 1부씩
요구사항	세부	제출하여야 함
상세설명	내용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야 함
		○ 도입 자원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 후, 계약체결 전 제출)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GS 인증서

#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	- - -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모든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및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함</li> <li>□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li> <li>□ 서버의 OS 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검수 후 무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함.</li> </ul>

	<ul> <li>신규 서버는 검수 완료 후 3년 이내 시스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구성품이 단종 되거나 교체 불가 시 무상으로 동일 제조사의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li> <li>도입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으로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신규 장비 품질보증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신의 고가용성 장비가 도입되어야 함. 그에 따른 장비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Certification), 제시한 장비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본 사업에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품질을 제안사가 보장하여야 함. 단, 해당 제품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성능이 낮거나 상이할 경우 장비의 성능을 보강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Certification)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	- - -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DBMS,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능 확보를 위한 각 요소별 최소 성능 기준, 성능 검증기준, 성능 검증방안,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검증 방법은 협의)</li> <li>○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내·외부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개선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다수 기관, 대량 전송에 대한 성능테스트 수행방안 마련 및 수행</li> <li>- 전송완료 속도 측정 및 네트워크 대역 측정</li> <li>○ 데이터베이스 교체 대상 이전 시스템들의 고부하 업무를 선정하여 비교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비교할 업무는 협의 후 선정)</li> <li>- 정형, 비정형, 집계 등의 업무 비교분석 등</li> </ul>



	○ 실제 업무 상황에서 가동 시 DB서버의 CPU 및 MEM 용량,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가능성에
	대비한 성능 보장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PoC 수행보고서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	-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상용 암호화 솔루션과의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것</li> <li>○ 자체 접근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상용 접근제어 솔루션과의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것</li> <li>○ 상용 CDC(Change Data Capture) 솔루션과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것</li> <li>○ 상용 백업 솔루션과의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것</li> <li>○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과의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것</li> <li>○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솔루션 이용 및 연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li> <li>○ 주 센터-DR센터 시스템 간 암호화 방식의 일치성에 관해 사전확인하고 이슈 발생 시 장애 요인 제거 및 해결 방안 제안</li> </ul>	
산출정보			

###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당	명 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요구사항 분	- 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운영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위해 SW, 부품 및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이관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아래 [표] 참고)</li> <li>[표] 이관 대상 데이터베이스</li> </ul>		

	주센터	재해복구센터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 사업 중 각 병원의 DB를 후 동기화	주 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로 이전	<u>1</u>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소화하고 데이터의 안정성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수립을 통해 단계별 문제 예측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ul><li>이관 테스트를 통해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li></ul>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마련하여야 함	
	<ul><li>이관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li><li>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li></ul>	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하여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테스	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	<del>-</del> 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li> <li>- 목표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AS-IS 및 TO-BE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험운영,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li> <li>- TO-BE 운영 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li> <li>○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li> <li>○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이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과 새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이관 시나리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당	명 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검증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	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각 단계별 수행시간, 일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li> <li>○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li> <li>- 데이터 검증은 이관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관되었는지를 검증</li> <li>- 이관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관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며, 이관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li> <li>○ 최종 데이터 이관 작업과 이관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li> <li>○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체크리스트, 데이터 이관 검증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1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트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권 관련 법령 및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세부 내용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기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공 공 데 이 터 포 털 (data.go.kr) → 정보 공유 → 자료실	
		앵싱규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경세결령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 관리 가이드 5종」	별첨 참고자료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 DB 품질진단(표준, 구조, 값)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 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 제안시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b>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b>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b>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b>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요구사항	세부	정의하여야 함
상세설명	내용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함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시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1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 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b>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b>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O크피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 <b>(정의서)</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상세설명	내용	○ <b>(다이어그램)</b>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b>(메타데이터)</b>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 제안시는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 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등) (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5	명 칭	테스트 요구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	른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계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테스트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li> <li>○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li> <li>○ 단위 및 통합테스트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것</li> <li>○ 테스트 시,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것</li> <li>○ 통합테스트의 경우, 전체 업무 및 연계업무를 포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것</li> <li>○ 로드밸런싱 및 Fail-Over 등의 테스트는 실제 환경과 유사 또는 실제환경에서 수행하여야 함</li> <li>○ 백업 테스트는 복구까지 포함함</li> </ul>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환경구축 및 수행은 구축 사업자가 담당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 중 개선사항(시스템 재구성, 시스템 튜닝, SQL
	튜닝 등)은 즉시 반영하여 재시험을 하여야 함
	○ 장비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제안사 대표가 인장으로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li> <li>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확보 및 운영시스템 성능유지 방안 제시</li> <li>시스템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제시</li> <li>Top SQL에 대한 튜닝</li> </ul>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튜닝 결과 보고서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용역 수행 업체는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li> <li>○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li> <li>○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li> <li>○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준수</li> <li>○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준수</li> <li>○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li> </ul>	



	○ 침해 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	른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제안사는 제안(도입)한 장비에 악의적인 정보유출 기능의 탑재 여부를 확인하여 제안하여야 함</li> <li>- 원 제조사의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출</li> <li>○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안(도입) 제품의 백도어 기능이 발견되거나 악의적인 정보 유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경우 동등 규격 제품 이상으로 제품 무상 교체 제공하여야 함</li> <li>○ 제안사가 납품 및 설치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의적인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분	- -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사업자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li> <li>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li> <li>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li> </ul>	

	<ul> <li>○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li> <li>○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li> <li>○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li> <li>○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	<sup>분</sup>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아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 자료 포함)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파일서버와 잠금 장치된 캐비닛), 단, 비공개 자료의 경우 매일 퇴근 시 반납함</li> <li>아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가 되어야 함</li> <li>아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li> <li>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li> <li>이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어야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함</li> <li>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을 해지함</li> <li>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li> </ul>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 접속 통제,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고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 일반 USB, 외장형 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 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함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고 사용할 수 없음 업무에 사용한 해당 노트북 및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로위벨 포맷을 실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하고, 개발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계획 수립 및 실행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대비하여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점검 및 조치를 이행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실시 사용자 PC와 웹 서버 간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기 위한 업계 표준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를 사용하며,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사용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야 함
건물성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정보보안 등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li> <li>○ 사업 착수 시</li> <li>-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제출</li> <li>-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li> </ul>	



대한 보안교육 실시  아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관보안 교육에 참석  아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완료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아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전신망 구성도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아사업 참여업체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차및 전달자료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사업회수 및 자료 삭제에 대한 증적 사진 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아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별도 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교육 및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대하여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이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이산출정보	산기관이 요구할 경우  서버의 경우, 사업 도치 는 안 되며, 이를 위반 H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시행령 재조치를 실시하고  근 관리 대장을 작성, 한 후 인계·인수 하여야 함 단을 위해 서약서 징구 종료 시 관련 자료 보 등 용역업체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고, 주기적인 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니는 O 사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품질
요구사항 분	른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성능 및 기능으로 인한 대상서비스,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정을 조정하여야 함</li> <li>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기능 및 서비스의 심각한품질저하 또는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취하여야 함</li> <li>동일 제조사 또는 타 제조사의 동급이상 신제품으로 교체</li> </ul>



	<ul> <li>제안사는 도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공급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할 것</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상상태에서 매일·24시간 무중단 운영되어야 함</li> <li>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시스템은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li> <li>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안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	-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li> <li>○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li> <li>○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li> <li>-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li> <li>※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한계 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이때 지연된 일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li> </ul>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분	<sup>분</sup>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정품 납품</li> <li>●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라이선스 모두 제공</li> <li>●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li> <li>●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li> <li>●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li> </ul>
산출정보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	<del>-</del>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함</li> <li>○ 발주기관의 서버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감안한 효율적인 작업 장소 및 수행 방법을 제안하고 협의하여야 함         (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4층 서버실 (재해복구센터) 경기도 안산시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li> </ul>



	(통영적십자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경인권역재활병원) 인천광역시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구축 환경
요구사항 분	<del>-</del>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 및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li> <li>시스템 전환,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장비 포함</li> <li>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소프트웨어(DBMS,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유관 정보화 사업 고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타 정보화사업의 일정 및 수행 내용을 고려하여 시스템 분석・설계・구축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여야 함</li> <li>○ 본 사업과 유관 정보화사업으로 인해 최적화 구성 및 성능 저하 등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li> <li>○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계획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수행계획서(일정

	계획, 수행인력 관리, 위험관리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및 완료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시점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	-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제시하여야함</li> <li>○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li> <li>○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제시하여야함</li> <li>○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함</li> <li>○ 자원 추가 및 재배치, 이행 등수행시 업무, 관련사업일정,오픈일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치밀한계획을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li> <li>○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조정할수 있음</li> </ul>			
산출정보		위험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li> <li>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li> <li>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li> </ul>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	<sup>ệ</sup>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 본 사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li> <li>○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li> <li>○ 하자보수 기간 중 설치환경 및 장소, 운영여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지원</li> <li>○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부담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신품으로 교체 제공</li> <li>○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그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ul><li>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격지원으로 초기 대응 후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빠른 복구가 가능토록 3시간 이내 방문 지원</li></ul>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ul> <li>납품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li> <li>본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용하여야</li> </ul>		



	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구성 변경
	-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 납품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신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사용기간 동안 구입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사용기간 동안 구입 제품에 대한 긴급 패치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무상으로 추가 지원하여야 함
	○ 설치환경 및 장소, 운영 여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향후 발주기관의 시스템 확장 및 이전설치, 타 기종으로의 교체,
	OS 재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V

### 제안안내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및 안내

####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서버 장비의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 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 공동수급(컨소시엄)이 있을 경우, 동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 획재정부계약예규)」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에 의거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 조(공동수급체의 구성)를 준수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하도급: 불허

#### □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 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2. 사업자 선정 방식

####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 의2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준용

#### 3.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평가

- 종합 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 정성(비계량) 평가(70점) + 정량(계량) 평가(20점)

####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평가 항목 및 정성평가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정성평가 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 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함
-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단,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방식은 PPT 방식으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진행하며,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3명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제안서 설명회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공개하고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경영현황 (20점)	경영상태	[표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10	정량 평가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표2] 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1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 였는지 평가한다.	5	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기능성 여부를 평기한다. 또한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 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평기한다. 품질인증(CS인증)1등급,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제품 여부와 중소기업자개발제품여부를 평기한다.	10	정성 평가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 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정성 평가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일정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지 평가한다. 또한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 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정성 평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 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 [정성(비계량)평가 배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	3.5	3

#### [표1]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인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9.9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표2]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평가(10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함

평가등급	평점
500,000,000원 이상	10
450,000,000원 이상~500,000,000원 미만	9
400,000,000원 이상~450,000,000원 미만	8
400,000,000원 미만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주]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수 있다.
-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 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 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 적 확인서
-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 한다.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 입찰가격 평가 방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함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 동점자 처리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경쟁 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여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 4. 제안서 제출 안내

- □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7부(원본 1부 포함) 및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 필요 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참조) 각 1부

###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원칙(이메일, 택배, 우편제출 등 불가)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제안문의) 적십자의료원 병원사업본부 대외협력팀 이우형 팀장(02-739-7649)
  - (제안문의) 적십자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노유곤 과장(02-739-7648)

## 5.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6. 제안평가 발표

- □ 유효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



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외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설명회 현장에서 추가자료 배포 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 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7. 기타사항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 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 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요청 시 사본을 반환하여 드리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 기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의 현행 법령을 우선 적용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부정

당업자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SW 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제도 준수) 해당사항 없음
-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우선검토) 해당사항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 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납품 검사 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 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 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용역계약 일 반조건」 제52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 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 는 부대비용 등)
  -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 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 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 부 가능

####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 참고사항 >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해당사항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해당사항 없음
- **(하도급 비율제한)** 해당사항 없음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해당사항 없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 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 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방화벽 · 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리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해당사항 없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료원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VI

##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서 효력

### □ 세부내용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 세부내용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 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책자 또는 3홀 바인더 제본형태를 사용하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60페이지(30장)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0페이 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 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에 일런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 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 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 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 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 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제안개요(사업 추진 관련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l.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시,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도입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I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항목	작성방법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보안 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VI.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별첨 1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	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사업명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2	대해복구시스템 구축				
	영항평가단계	□ 예신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C. The	주요 내용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게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	<sup>)</sup> 리 사업				
1. 기본정보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	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0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0			
	구분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소프트웨어 사업	대상으로 제공하는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①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2. 운영계획		구분	예상 사용자	<b>수</b>			
	사용자	■ 내부 직원		1,3009			
	(복수선택 가능)	□ 타 기관 직원		9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9			
	주요기	등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 □ 있음 ■없음	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10 BM 7100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사업을 통한 민간 * Open API 등을 절차 제시, 중장: (기여 방안 :	)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 기 민간 이양 계획 등		일 표준업무			
18-01-7	■ 민간 소프트웨어 시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 (추진 방안 :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기관명: 대한적십자	2024년 2 080	505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사업명		적십지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발주부서	의료원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KRC정-24-003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	템 구축	
심의	실 자	2024년 3월 6일	심의장소	서면심의
심의경	결과	[ ] 승인 [ ] 불가	[√] 조건부 승인	1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 1. 사업목적과 사업기간, 과업내용은 적정하나, 다음의 사항 보완 필요
  - 가. 세부 과업내용 보완 필요
    - 장애대응 요구사항(QUR-04)의 연장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 명시 필요
    - 입무 피크시간 실시간 복세 수행 시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 등 지 면 발생에 대한 제 성능 보장 방안 제안 필요
    - 주센터-DR센터 시스템과의 암호화 방식의 일처성 및 암호화키 동기화 이슈에 대한 발주전 사전확인 및 이슈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안하도록 검토
  - 나. SW사업 산출내역서 급액산점에 관한 사항
    - 업체견적가\*(502,317,200원) 대비 사업계획서의 사업예산(500,000,000원)이 낮게 책정된 사유에 대한 추가자료 필요
    - 제안요청서 35페이지 [표2]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평가의 평가등급 금액 조정 필요(해당 사업금액 기준 등급산정 필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위	원				위	원	*
위	원	*		,	위	원	
					914	신장	100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 [별첨 3호]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4) I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1. 주 센터 DB의 재해복구센터(DR) DB 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센터 DBMS인 오라큼과 동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	데이터 복제 SW	12식	직접구매 ( ) 제 외 (√)	대이터 이관자업 시 정합성·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 유지 필요  2. 도입되는 장비, 기존 운영 프로그램 및 여타의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다양한 기술요소 등에 의해 기능, 성능 유지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통합 발주로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 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발주기관장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장



#### 유의 사항

-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 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 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붙임 1호]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1.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규정,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 [붙임 2호]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시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上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3호]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 위규 수준에 따라 A~D 등급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TE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붙임 4호]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 11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5호]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적십자병원 병원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4. 2.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가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교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교시) ○ 행정건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전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구분	항 목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嘚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있도록 표준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0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0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0					
	- XHTML 1.0				0					
외부 접근 장치	- XML 1.0, XSL 1.0				0					
0 1	– ECMAScript 3rd				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0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0					
서비스 전달	IPv4	0								
프로토콜	IPv6	0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ł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하고, 개발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린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0	
	- UDDI v3				0	
서비스 통합	- RESTful				0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0	
	- ebXML/BPEL 2.0/XPDL 2.0				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鸣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바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0				
하는 임베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0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0	
	- SIP				0	

		적용계획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점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Megaco(H.248)				0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0			
	- UNIX	0						
	- Windows Server				0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0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0			
	- IOS				0			
	- Windows Phone				0			
	o DBMS							
	- RDBMS	0						
데이터베이스	- ORDBMS				0			
	- OODBMS				0			
	- MMDBMS				0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0			

## □ 요소기술 분야

7 1	al 0	적용계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	
	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0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0	

7 4	a	적용계	석용계	획/결고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					
하여야 하미 행정안전부 준화 추진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0	
연계를 위해	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를 지원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0	
	o 정적표현 : HTML 4.01				0	
	o 동적표현					
	- JSP 2.1				0	
데이터 표현	- ASP.net				0	
	- PHP				0	
	- 기타 (				0	
	o 프로그래밍					
	- C				0	
# <b>-</b>   -   -	- C++				0	
프로그래밍	- Java				0	
	- C#				0	
	- 기타 ( )				0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0	
데이터 교환	- SOAP 1.2				0	
	o 문자셋					

구 분	항 목	Z	석용계	부분적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UC-KR				0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0	

## □ 보안 분야

		Z	석용계	획/결고	<b>박</b>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기본 지침									
이를 접근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0								
	t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0								
o 네트 기능	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0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0								
관련 규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0								
0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0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	보보호.	제품)							
	- PKI제품				0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0					
제품별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도입 요건	- 메일 암호화 제품				0					
및 보안 기준	- 구간 암호화 제품				0					
준수	- 하드웨어 보안 토큰				0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0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0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0					

		7	서요계:	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구 부분 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	경우 노	보안적	합성 검증 '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0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0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0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0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인터넷 전화 보안			0	
	- 무선침입방지			0	
	- 무선랜 인증			0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네트워크 접근통제			0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0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패치관리			0	
	- 스팸메일 차단			0	
	- 서버 접근통제			0	
	- DB접근 통제	0			
	- 스마트카드			0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0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0	
	- 스마트폰 보안관리			0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 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0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2	석용계	예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712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circ$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0				
	- 망간 자료전송				0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0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circ$				
	- 가상화관리제품				0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0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0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circ$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0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0				
	- 암호지원				0				
	- 정보 흐름 통제				0				
	- 보안 관리				0				
백도어 방지	- 자체 시험				0				
기술적	- 접근 통제				0				
확인 사항	- 전송데이터 보호				0				
	- 감사 기록				0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0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0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0				

	항 목		석용계	부분적용/		
구 분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유 및 대체기술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0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0	

<sup>※</sup>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서식 1호]

#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제안내용	제 안서 Page	비고
ECR-01					
기타					

<sup>※</sup>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 [서식 2호]

## 제안서 객관적 평가 산정표

구분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00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기준이며,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제안사) 수행실적 평가	OOO백만원	(제안사 기준) 수행실적증명서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분석·평가 사업 실적

<sup>※</sup> 산정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sup>※</sup> 자료 미작성 및 미제출 시 평가항목 최저점 부여

### [서식 3호]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u>주요연혁</u>		

- \* 주요연혁부분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제출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서식 4호]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BPR/ISP			
		전략컨설팅			
	컨설팅부문	보안컨설팅			
매 출 액		감리			
에 걸 ㅋ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주요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기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서식 5호]

##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丑 2	47		
	영 업 소 재 지					전 호	ŀ 번 3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터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	용					
사 업	사 업 명				구 분	PMC 시스	3PR )/감리 템개발 및 유자민 타	빔(	)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		이행실		실적 		비고	ت ت	
		- 1 1 - 1	- 1 1 1 1	· 기약금액 F	공동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	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 급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기 관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기				<b>⊹</b> :	(인)			

-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